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8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사항을 폐지하고, 군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별지 제7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례·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함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- (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제4항
- (2)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제3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4. 10. 2. ~ 10. 22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요양·장해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례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)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		
[별지 제7호서식] (뒤쪽)		[별지 제7호서식] (뒤쪽)			
제출 서류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, 2. 장해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 3. 장례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,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내역서 각 1부. ② 장해증명서류 1부.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. ⑦ 통장사본 1부.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수수료 없 음	제출 서류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, 2. 장해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 3. 장례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,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내역서 각 1부. ② 장해증명서류 1부.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. ⑦ 통장사본 1부.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요양·장해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례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·인감증명서)	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요양·장해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례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)		

관 계 법 령

□ 자연재해대책법

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·대응·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

제27조의3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)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요양보상
2. 장해보상
3. 장례보상
4. 유족보상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